

삼성KPMG DPP

IFRS Brief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4년 5·6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공개초안] IAS 1 개정 - 공시 프로젝트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Global 동향

- 2014년 2월, 3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 2014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No.38

- MMT, MMF 등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4년 2월 21일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초안] IAS 1 개정 - 공시 프로젝트

2014년 3월, IASB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배경

2013년 11월, Agenda Consultation 2011 중에 IASB는 기존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공시 개념체계에 대한 개발을 요청 받았다. IASB는 표시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개념체계' 재검토 프로젝트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개념체계 프로젝트 외에도 별도의 공시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개초안은 공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하나로, 현행 IAS 1의 표시 및 공시 규정에 대하여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고,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 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

공개초안에서는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사항들은 현행 실무에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나,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기준 하에서도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내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중요성

공개초안에서는 중요성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준서에서 특정 사항의 공시를 최소 공시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시사항이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석

주석의 순서는 기준서에서 정하지 않고, 기업이 유연하게 주석에 대한 체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계정책을 관련된 주석과 함께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의 표시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상 개별 항목들을 세분화하여 표시함
- IAS 1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재무상태표에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중간합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조정항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표시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다른 기타포괄손익과 구분하여 표시하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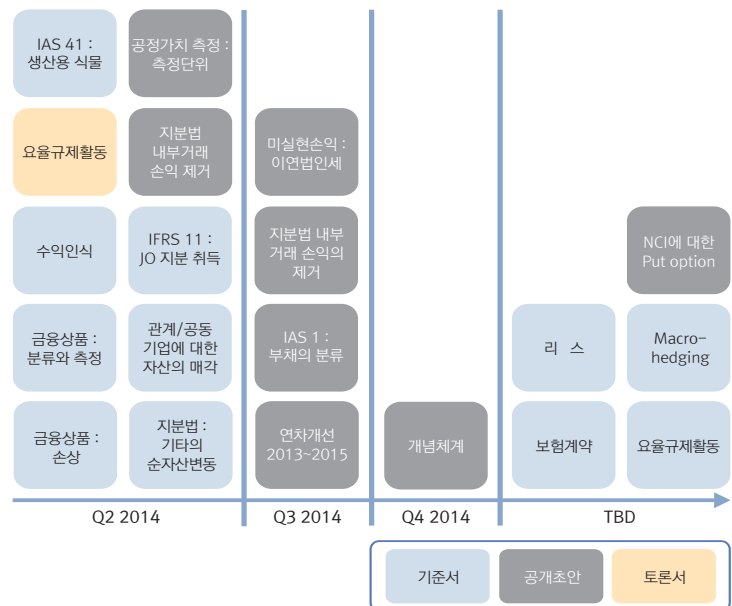
공개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2014년 7월 23일까지 IASB에 접수할 수 있다.

공시 프로젝트의 주요 진행상황은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와 기타 기준서 개정작업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프로젝트 중, IASB의 2, 3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IFRS 9 금융상품

1. 분류와 측정

IASB는 IFRS 9 개정사항에 대한 due process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므로, IFRS 9 분류와 측정의 제한된 개정사항 초안이 작성될 것이다.

2. 손상

IFRS 9의 의무 시행일

IASB는 IFRS 9의 의무시행일에 대해 논의했으며, IFRS 9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IASB는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보험계약 기준서의 적용시기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적용시기에 따라 IFRS 9의 시행일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될 보험계약 기준서보다 IFRS 9을 먼저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경과규정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IASB는 손상기준의 개정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므로, 손상기준의 초안을 작성할 것이다.

II. 요율규제활동

IASB는 토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다른 활동과 구분되는 요율규제활동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 요율규제기업이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익금액을 결정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요율규제활동의 구별되는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제정될 예정인 수익 기준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익 모형이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모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IASB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의 수익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요율규제기업과 요율규제자의 관계를 반영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토론서에서 이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판단하였다.

III. 리스

2014년 3월 IASB와 FASB의 회의에서는 2013년 ED와 관련하여 최초로 여러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졌으나, 여러 이슈에 대하여 두 위원회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 주요 이슈별로 두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IASB	FASB
• 리스 분류 : 단일 모형으로 금융/운용리스, Type A/B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 모든 리스가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	• 리스분류 :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리스의 유형분류기준 : 현행 IAS 17 기준) • 모든 리스가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나 - Type A 리스 : 자산매입처럼 회계처리 - Type B 리스 : 전체 리스관련비용을 정액법으로 인식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IASB	FASB
• 리스 분류 :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리스의 유형분류기준 : 현행 IAS 17 기준) • IAS 17의 금융리스회계처리, 즉 리스자산 제거하고 리스채권 인식 • Type A 리스 : 리스개시 시점에 리스자산처분이익 발생 가능	• 좌동 • 좌동 • 제3자의 잔존가치 보증 등에 의해 Type A로 분류되는 리스에서는 리스개시시점에 처분손익이 인식되지 않음

리스기간 및 매수옵션

리스기간 연장옵션, 매수옵션은 행사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리스회계처리에 고려되어야 함.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연장옵션, 매수옵션을 재평가하며, 리스제공자 측면에서는 재평가를 하지 않음.

단기리스와 소규모 리스

12개월 미만의 리스에 대해서는 리스회계처리를 면제하며, IASB는 누적시 중요한 경우에도 소규모 리스에 대해서는 리스회계처리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FASB는 이러한 면제를 두지 않음.

IV. 보험계약

IASB는 3월 회의에서 2013년에 발표한 공개초안 '보험계약'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미래 현금흐름추정 변동에 따른 계약서비스마진^{주1}의 조정

미래현금흐름 추정 변동분을 계약서비스마진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2010년의 공개초안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미래 보험보장 및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은 계약서비스마진에 전진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잠정 결정하였다.

(주1) 계약서비스마진 : 보험계약의 이익 개념으로서, 보험계약부채 측정 시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익을 제거한 후 체계적인 보장기간 동안 이익으로 인식함. 보험계약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에 대한 부(-)의 이행현금흐름액(기대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기대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위험조정)을 계약서비스마진으로 계약서비스마진으로 최초 인식함



• 2013 공개초안에 제안된 다음의 내용을 확인

- 계약 개시 이후, 미래의 보장 및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으로 인한 유리한 또는 불리한 변화를 가산 또는 차감 조정함. 다만, 계약서비스마진은 부(-)의 금액이 될 수 없음
- 계약 개시 이후, 미래의 보장 및 서비스와 관련 없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 (예를 들어, 과거의 보험보장과 관련된 기발생 보험금청구액에 대한 추정 변경)

• 손실 전환(loss reversal)에 대하여 추가 고려함. 과거 손실의 인식 후 미래 현금흐름의 유리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미래의 보장 및 서비스와 관련된 손실을 한도로 이익으로 인식함

• 현금흐름 추정 변동뿐만 아니라 위험조정^{주2}의 추정 변동 일부도 계약서비스마진에 반영하며, 미래의 보장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 추정치의 차이로 인한 유리/불리한 변화는 가산/차감 조정함. 다만, 계약서비스마진은 부(-)의 금액이 될 수 없음. 결과적으로, 당기 또는 과거의 보장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인율 변동의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최초 계약시점의 할인율을 기초로 당기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평가시점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계약 부채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IASB는 다음을 잠정 결정하였다.

• 할인율변동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할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할지 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해야 함. 단일의 포트폴리오 내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아래의 지침을 회계정책에 추가 반영하여야 함.

-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유사한 포트폴리오 집합"에 대한 지침
- 회계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IAS 8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

•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계약이 최초로 인식되는 날 적용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보고기간 종료일에 적용된 할인율로 측정된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계약이 인식된 날 적용된 할인율로 측정된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주2) 위험조정 : 보험자가 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보상을 의미함. IFRS 4 Phase II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부채 측정시 4가지 요소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계약서비스마진 그리고 위험조정)를 고려하는 Building Block Approach를 취하고 있음



• 다음 항목의 공시가 요구되며,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할 요구사항들을 제시함

- 모든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이자비용의 분석
- 할인율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분석

다음 회의에서는 보험계약 수익에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고, 2013 공개초안에서 IASB가 의견을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제기된 기타 이슈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배당요소가 있는 계약에 대한 이슈는 이후 단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V. 공시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

IASB는 공시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공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시 프로젝트는 단기 과제와 중기 과제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각 과제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아래와 같다.

단기 프로젝트

주 제	주요 내용
중요성	IASB는 중요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실무 상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중요성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려한다. 2014년 3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AS 1 개정	IASB는 IAS 1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 대하여 제기된 몇 가지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며, IFRS 해석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다른 IAS 1 개정사항도 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검토한다. IAS 1 개정 공개초안이 2014년 3월에 발표되었다. 또한 IASB는 단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부채'에 대한 공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 프로젝트

주 제	주요 내용
IFRS 표시와 공시에 대한 연구	IASB는 IAS 1, IAS 7 '현금흐름표'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 기준서들을 표시와 공시를 포괄하는 하나의 기준서로 대체해야 할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제회계기준의 공시 개념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는 IASB가 과거에 진행했던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Project에서 논의된 사항을 재검토한다.
기준서 단위의 공시사항 검토	IASB는 현행 기준서들의 공시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상충이나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중 3월 회의에서는 '중요성'과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요성

IASB는 중요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작성자, 감사인 및 규제기관에서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재무제표 전체 수준에서의 중요성 적용에 대하여 주로 논의할 것이나, 재무제표 주석에서의 중요성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 '중요성'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부족
- 중요성 개념의 적용 시, 특히 주석에서의 중요성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
- 기준서 상 공시의 목적 및 공시사항 규정 시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

부채의 변동

IASB는 IAS 7 '현금흐름표'를 개정하여, 재무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채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의 변동내역을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IASB는 현금의 사용제한에 대한 공시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공시 프로젝트에서 IAS 7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Global 동향

I. 2014년 2, 3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4년 2, 3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AS 28] 지분법 : 기타의 순자산 변동

IASB는 특정 상황에서 기타의 순자산 변동을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스텝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였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므로 분석내용과 같이 기준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하여 적용될 것이다.

2. [IFRS 2] 주식기준보상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음 네 가지 IFRS 2 개정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성과조건을 포함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
- 결제방법이 미래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주식기준보상
-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주식기준보상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주식기준보상의 조건변경

성과조건을 포함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

IASB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가득조건 효과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사용되는 접근법과 동일해야 한다고 잠정 결정하였으며,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반영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적용사례와 지침을 추가할 것이다.

결제방법이 미래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주식기준보상

IASB는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에 따라 결제방법이 결정되는 주식기준보상 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방법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한다는 해석위원회의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일부 위원들은 이러한 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현금이나 기타의 자산을 인도하는 것을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않았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해석위원회에서 고려한 각각의 방법이 현재 실무에 주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주식기준보상

IASB는 IFRS 2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원천세를 제외하고 순액으로 지급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에 대하여 지침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추가되는 지침에는 이러한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전체 주식기준보상이 세금을 제외한 순액으로 결제되지 않았다면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되는 조건이라면, 전체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주식기준보상의 조건변경

IASB는 조건변경으로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조건변경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해석위원회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였으며, 해석위원회에서는 조건변경의 결과 부여되는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부 위원들은 이러한 측정치는 조건변경 시에도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는 기존 IFRS 2의 원칙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추가 분석을 요청하였다.

3. [IFRS 10/IAS 28] 연결재무제표/지분법과 관련된 개정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IFRS 10과 IAS 28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IFRS 10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규정의 면제 :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적용

IASB는 투자기업이 아니지만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중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10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기업인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

IASB는 잠정적으로 IAS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동기업의 당사자이면서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는 투자기업인 공동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계속 적용할 수 없음
- 비용-효익 관점에서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계속 적용

4. [IFRS 10/IAS 28] 투자자와 관계 · 공동기업 간 자산의 매각 또는 출자 거래

IAS 28의 문단 31에 따르면, 투자자가 자산을 출자하면서 관계기업/공동기업의 지분을 수령하고 추가로 자산을 받는 경우, 투자자는 출자한 자산에 대한 당기 손익 중 수령한 자산과 관련된 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IASB는 이 문단 31의 지침이 현행 IAS 28 및 향후 개정될 IFRS 10/IAS 28(투자자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간 자산의 매각 또는 출자 거래)의 규정과 상충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출자한 자산과 교환으로 받는 자산과 관련된 손익 중 투자자의 몫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IAS 28의 문단 31을 개정할 것을 제안
- 상기 결정사항을 향후 발표될 공개초안 '하향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의 제거'에 포함



등 개정 및 공개초안(하향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의 제거)은 2014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5. [IAS 27] 별도재무제표 상 지분법 적용

IASB는 공개초안(별도재무제표 상 지분법 적용 - IAS 27의 개정)상 제안 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의 요약과 분석을 보고받았으며, 잠정적으로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IAS 27의 개정안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회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이슈들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II. 2014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4년 3월의 IFRS IC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개정 진행 중인 사항 관련 논의

(1) [IFRS 11] 공동약정 실무적용 이슈의 분석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과 관련된 실무 적용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 공동약정이 '기타 사실과 상황'으로 인하여 공동영업으로 분류되는지를 논의하였다. '기타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는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성되지만, 법적 형식과 계약상 약정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에 필요하다. 즉, '기타 사실과 상황'을 평가하는 목적은 공동약정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보장하고 있는 당사자들로부터의 지속적인 현금 유입이 공동약정에서 발생한 부채 결제의 유일한 원천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을 지원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도는 공동약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당사자들이 부담한다는 의무를 확고히 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이라는 개념이 실무상 이해되거나 적용되는데 일관성이 부족할 것이므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IASB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2) [IAS 12]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해석위원회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미실현손실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12의 개정을 IASB에 권고하였다. 개정될 사항은 IAS 12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미실현손실은 보유자가 채무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모두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손실이 실현될 때까지는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킴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다른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함께 평가해야 함
- 미래 세무상이익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자산을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러한 회수를 가정함.
- 현재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실현될 수 있는 미래 발생가능한 세무상 이익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세무상 효과를 제외하고 평가함
- 제시될 사례에서는 세 가지 원천(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미래 환입, 미래 세무상 이익, 세무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세무상 이익이 차감할 일시적차이 전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의 이연법인세자산 평가를 설명해야 함.
- 미래 세무상이익이 충분하지 않아 이연법인세 자산을 모두 인식할 수 없을 때에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함. 해석위원회는 이 경우,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합리적인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례의 초안을 수정할 것이며, 향후 IASB 회의에서 해석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2. IFRS IC Agenda decisions

(1) [IFRS 10] 투자관련 용역 또는 활동의 정의

해석위원회는 세금 최적화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지배기업과 관련하여 ‘투자관련 용역 또는 활동’의 정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우에 따라 투자기업들은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 중의 일부를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중간지배기업을 설립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투자관련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과거에 IASB에서는 세금 목적으로 설립된 종속기업들을 연결해야 할지를 고려하였으며,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설립된 종속기업은 다른 활동이 없으므로 “투자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Agenda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IAS 39] 이자율 기간구조 환매거래(Term-structured repo transactions)

해석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거래를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거래 1(채권 매입) : A사는 B사로부터 채권을 매입
- 거래 2(이자율 스왑) : A사는 B사와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 A사는 채권의 고정된 쿠폰이자를 지급하고, 변동이자를 수령함
- 거래 3(재매입 약정) : A사는 거래 1의 채권을 매입하는 날, 동일한 채권을 매각하고, 만기일에 채권을 다시 재매입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

해석위원회는 위의 거래들을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인 IAS 39의 B.6과 C.6을 검토하였으나, B.6의 지침에서는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 지표의 존재만으로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지시하는 것이므로 이 이슈를 Agenda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3) [IFRIC 21]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이 연중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석위원회는 최소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나, 기업이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일수에 따라 임계치가 비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기중 관련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만 보다 낮은 최소임계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말에 적용되는 최소임계치에 도달하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정조건이 충족될 때 최소임계치가 비례적으로 낮아지는 것과 의무발생사건이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서로 다르며, 실무상 다양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Agenda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Tentative agenda decision)

해석위원회는 발행자가 만기연장옵션, 조기상환옵션 및 이자지급 연기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신종금융상품의 주계약이 보유자의 입장에서 지분상품 혹은 채무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utreach 결과, 해석위원회는 해당 이슈가 광범위하지 않으며, 제출된 금융상품이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잠정 결정하였다. IFRS 9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자는 금융자산의 복합계약에서 주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금융상품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38〉 MMT, MMF 등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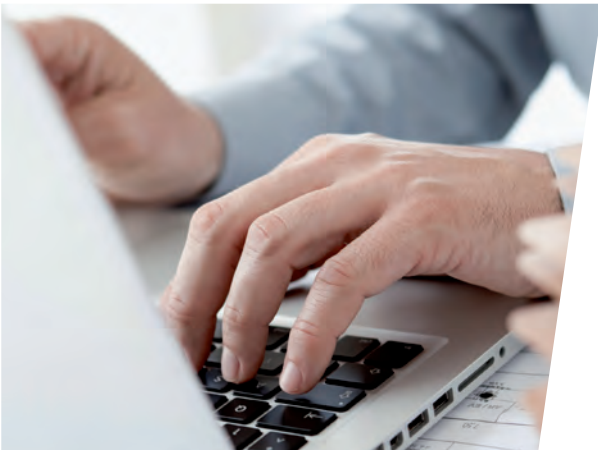
Money Market Trust(MMT), Money Market Fund(MMF), Money Market Wrap (MMW), Money Market Deposit Account(MMDA) 등의 금융상품은 그 투자형태와 실질이 유사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그 설립방식 및 특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구 분	MMT	MMF	MMW	MMDA
설립 형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관계	투자회사의 형태	투자일임계약 (Wrap account 형태)	예금
특 성	- 수익증권이 아닌 특정금전신탁의 형태 - 수익률 및 입출금이 자유롭고 당일환매가 가능한 등 MMF와 유사	- 간접투자 재산을 주로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 단기 실세 금리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반영	- CMA¹의 운용 방식 중 하나 - MMF와 유사한 형태이나 일대일 계약의 특성이 존재	- 투자신탁 회사의 MMF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MMT(특정금전신탁), MMF(수익증권), MMW(특정투자일임계약)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특정금전신탁 : 신탁자산의 내용(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 수익증권 :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 특정투자일임계약 : 특정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¹ Cash Management Account :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그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상기 금융상품들의 경우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위의 설명과 같은 설립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이 상이하다. 각 금융상품 별 적절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MMT(Money Market Trust)의 회계처리

MMT는 회사 형태를 갖지는 않았지만, 투자자와는 별도의 실체(Entity)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MMT는 자동조정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자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실체에 해당한다.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 별도의 실체인 MMT가 연결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익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MMT를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MMT에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를 적용하게 되면, MMT만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는 지배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서에 따르면,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속기업이 있는 지배기업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MMT만 있는 경우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2. MMF(Money Market Fund)의 회계처리

KPMG의 견해로는, 최초 투자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투자상품(예를 들어, 확정이자상품)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운용실적에 따라 상환액이 변동하는 MMF의 경우, 단지 시장가격으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단기보유목적으로 MMF에 투자하였다면 K-IFRS 1039에 따라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

3. MMW(Money Market Wrap)의 회계처리

MMW는 Wrap account 계약(투자일임계약)의 일종으로, 투자자의 계좌에서 직접 거래가 발생하고 거래된 자산의 소유권도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실체가 아닌 쌍방간의 계약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MMW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산은 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4.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회계처리

MMDA는 일반 예금과 유사한 거래이므로, 보유자는 K-IFRS 1039를 적용하여 적절하게 분류하고 회계처리한다

Contact u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허세봉 전무

T. (02)2112-0212

E. sebhonghur@kr.kpmg.com

노원 상무

T. (02)2112-0313

E. wroh@kr.kpmg.com

현승임 이사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이사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S.Manager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이지원 S.Manager

T. (02)2112-7625

E. jeewonlee@kr.kpmg.com

한상현 Manager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장재준 Manager

T. (02)2112-7896

E. jaejoonjang@kr.kpmg.com

이번호는 양진혁 S.Manager(B&F3)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www.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KPMG and the KPMG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